

청주지방법원 2022. 9. 22 선고 2022가단428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

전 문

원 고 1. A

2. B

피 고 주식회사 C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2. 9. 22.

주 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2022. 3. 31. 접수 제3401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나. 원고 B에게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2022. 3. 31. 접수 제3400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청구원인과 토지교환계약의 내용에 따라 주문과 같이 선택한다. 소장 기재 청구취지

제1항은 교환계약 해제를 주장하는 취지로 보인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판사 권노을

별지